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34호 2025. 8.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9호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1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0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0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934호 2025. 8. 11.(월)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86호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66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17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149호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나. 면적 (변경)

1) 지정 : 15,244.0m²

2) 변경 : 15,244.7m² (※ 확정측량 및 준공인가 반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천휘)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 서구 신석로122번길 19, 3층(석남동)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5. 8. 11.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m ²)	13,028.6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면적(m ²)	2,894.07	건폐율(%)	22.21
연 면 적(m ²)	84,791.99	용적률(%)	446.16
규 모	지하4층 / 지상29층	세 대 수	아파트 511세대, 오피스텔 134호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공급계획(변경)

구분	세대수 (아파트)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59.3534m ²	59.5699m ²	74.4273m ²	74.1924m ²	84.8793m ²
계	511	226	58	111	58	58
조합원분양	296	94	29	91	24	58
일반분양	209	129	28	19	33	-
임대	-	-	-	-	-	-
보류지	6	3	1	1	1	-

구분	세대수 (아파트)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59.3534m ²	59.5699m ²	74.4273m ²	74.1924m ²	84.8793m ²
계	511	226	58	111	58	58
조합원분양	295	94	29	90	24	58
일반분양	209	129	28	19	33	-
임대	-	-	-	-	-	-
보류지	7	3	1	2	1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기정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970.2㎡	도로	1,847.7㎡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 무상귀속
		주차장	368.1㎡			

변경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970.2㎡	도로	1,848.0㎡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 무상귀속
		주차장	368.1㎡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해당없음(철거완료)

6. 관련도서는 서구청 주택과(☎032-560-4592) 및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032-578-907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1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7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8.11. 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8-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7-11	인천광역시 서구 옛길1로 7 (오류동)	20121025	옛길로에서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환중1로 27 (백석동)	20220530	환중로 시작지점으로 부터 첫번째 도로	주연빌딩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88번길 36 (청라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청라 다리브 티아모 까사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2-3	인천광역시 서구 동화로15번길 19-8 (오류동)	20090922	동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26.(16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28너9255 등 13건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3, FAX 032-560-2793)		

○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3)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28너9255	G80	김*	2025.07.31
2	39어4352	Model X Plaid	하*****사	2025.07.25
3	57머9587	C200 K	이*희	2025.07.22
4	347마7398	투싼(TUCSON)	하*****)	2025.07.21
5	393보9222	G350 d	장*진	2025.07.16
6	343누9004	카니발	김*중	2025.07.15
7	22마3798	제네시스(GENESIS)	김*영	2025.07.10
8	334서2424	벤츠 A220	하*****사	2025.07.07
9	13저6052	카니발	김*님	2025.07.03
10	87우8904	봉고III 1톤	김*양	2025.07.03
11	354주8249	Mercedes-Benz GLC300 4MATIC	하*****)	2025.07.02
12	178너8638	K9	노*균	2025.07.01
13	151마7565	Mercedes-Benz E450 4MATIC	하*****)	2025.07.0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51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4. 12. 31. 일부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4. 12. 31.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31조, 안 제36조제1항)
-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0조 ~ 안 제4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3, 팩스 032-560-27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4. 12. 31. 일부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4. 12. 31.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31조, 안 제36조제1항)
-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 안 제4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제3조의 제목“(법령 등과의 관계)”를“(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선정 대리인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p> <p>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p> <p>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p> <p>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p> <p>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p>

량 납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2. 3. (생략)

제31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

량 납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1. ----- 제5호-----
- 2. 3. (현행과 같음)

제31조(업무의 범위) -----
----- 제5호-----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
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
에 대한 처리

4. (생 략)

제36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
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
수유예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
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5조의2-----

4. (현행과 같음)

제36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 제25조의2-----

-----.

제10장 선정 대리인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
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
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신 설>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생략)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7. 12. 29.]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 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4. 12. 31. 일부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지정 통지, 지정 사건 명세에 관한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26조 ~ 안 제28조, 안 별지 제45호서식 ~ 별지 제47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3, 팩스 032-560-27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4. 12. 31. 일부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지정 통지, 지정 사건 명세에 관한 규정 및 서식 신설
(안 제26조 ~ 안 제28조, 안 별지 제45호서식 ~ 별지 제47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규칙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을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조례”를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7조”를 “제36조”로 한다.

제6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선정 대리인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선정 대리인 지정통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명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처분내용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인천광역시장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및 부가가치세 다 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 신청인 : ○○○ 귀하

1.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_____, (휴대폰) _____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_____ - _____)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제1항 외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p> <p>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p>

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 ⑤ (생략)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 ④ (생략)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규칙-----.

제22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19조-----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제25조(징수유예 등) ① -- 제36조--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선정 대리인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선정 대리인 지정통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명세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

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24. 11.)」에 따라,
-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률의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한 제14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2항을 삭제하고,
- 신고,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의 방해 행위나 신고 취소 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실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실
- 전 화 : ☎ (032)560-6863,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지치법규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24. 11.)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법률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안 제14조제2항의 신고·상담·조사 등 방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 및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생 략)</p> <p>② <u>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u></p>	<p>제14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관계법령 발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의견제출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2. 개정이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24. 8 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정의, 용어 정비(제1조 ~ 제2조, 제5조, 제11조)
 - 목적 문구 간소화, 반복되는 상위 법령명을 약칭으로 규정(제2조)
 - 공공기관·소속기관 등 용어 → “서구청”으로 명확화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신고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제2조의2 ~ 제4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 명확화 및 보완 규정 신설(제7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에 대한 내용 구체화(제10조)

- 공용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제10조의2)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제10조의3)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2조의2)
- 부당이득 환수 등(제12조의3)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원의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행위제한 준수 의무 신설(제20조제7항)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절차 규정 신설(제22조)
-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서 식	서 식 명	내 용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조치결과’에 선택사항으로 ‘신고·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추가
[별지 제5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서식 신설
[별지 제9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서식 신설
[별지 제11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서식 신설
[별지 제12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서식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실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실
- 전 화 : ☎ (032)560-6863,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2024. 8. 14. 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내용 신설(안 제2조의2, 제4조)
- 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보완요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내용 및 소속기관 장의 허가 절차·방법 등 신설(제9조의2)
-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대한 방법 구체화(안 제10조)
- 마.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및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사.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원의 공무수행 사인으로서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준수 의무 추가(안 제20조)
- 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2조)
- 자. 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를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서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를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4항”을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

장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서구청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서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서구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서구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0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서구청의 미공

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서구청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서구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서구청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중 “소속기관”을 “서구청”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

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서구청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다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신고·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신고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② 확인·점검 내용	
---------------	--

③ 확인·점검 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 ②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③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월 예정)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월 ○○일)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월 ○○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서구청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③ 외부활동 주제				
	④ 외부활동 방법				
	⑤ 외부활동 일시 20 ~ 20			⑥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⑦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7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언론사 요청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법인을 대리해 ○○에 관한 소송 수행
 3) ○○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 ④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 ⑤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 ⑥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 ⑦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u>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u>」 ----- ----- <u>시행령</u>----- ----- ----- ----- ----- ----- ----- -----.</p>
<p>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u> 감사실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p>	<p>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 ----- 「<u>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u>제31조</u>----- -----.</p>
<p><신 설></p>	<p>제2조의2(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u>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라</u> 구청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 <u>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u></p>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신 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생략)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매계약 체결

별지 제6호서식-----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
 ----- 서구청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

일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별지 제7호서식-----
-----.

② -----

--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

② (생략)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

별지 제10호서식-----
-----.

② -----

제4조제1항부터 제5항-----
-----.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

----- 별지 제13호서식-----
-----.

제9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

<신 설>

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 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의2(서구청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서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서구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서구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10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서구청의 미공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서구청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서구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서구청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
 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 서구청-----
 ----- 별지
제15호서식-----

 -----.

제12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
 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
 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
 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
 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서구청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

----- 별지 제16호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 별지 제17호서식 -----
 -----.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

 ----- 별지 제17호서식 -----
 -----.

제16조(종결처리) -----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 ⑥ (생략)

<신 설>

<신 설>

----- 별지 제18호서식-----
-----.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별지 제19호서식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제28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4. 8. 1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 8. 14., 전부개정]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 1. 사업명
-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를 삭제하고 별표 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를 본문에 직접 명시 (안 제15조제3항제2호, 안 제1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6862, 팩스 032-560-27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를 삭제하고 별표 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를 본문에 직접 명시 (안 제15조제3항 제2호, 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 략)</p> <p>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u>별표 1</u>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등</p> <p>3. ~ 8.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u>-----</p> <p>3. ~ 8.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써 <u>별표 2</u>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 ----- ----- ----- ----- ----- <u>「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u>-----</p>

② ~ ⑧ (생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발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2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

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민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토지정보과, 전화 032-560-4842, 팩스 032-560-2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공동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p> <p><신 설></p> <p>② · ③ (생략)</p>	<p>제3조의2(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공동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실무에 맞게 정비하며,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위원회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조, 안 제7조)
- 다. 기부증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 실무에 맞게 정비하며,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위원회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조, 안 제7조)
- 다. 기부증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별첨
- 나.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및 제2조(종전의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부자 명부관리 등)”을 “(기부자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발급”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하고”를 “보존하며”로, “시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제6조에 따른”으로, “심의 의결한”을 “심의·의결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중 “범위에서 수당”을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000호

기부증서 (제4조제1항 관련)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u></p> <p><u>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p> <p><u>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u>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u> <u>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 5. (생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

-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

② -----

----- 보존하며-----

--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
 ----- 심의·의결한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① ---

----- 법 제5조제3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기부자의 상징물 및 명단의 설치 장소,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

---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관계법령 발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든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3. ~ 5. 생략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정성 미비 조항의 정비를 위해 전문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보완(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나.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4조)
- 다. 금고 약정, 금고 약정의 해지,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부터 안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정성 미비 조항의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보완(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나.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4조)
- 다. 금고 약정, 금고 약정의 해지,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

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금고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위원회를 평가위원회의로 본다.

제13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구청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금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8 (6) (5) (6) (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4 6 1 2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7 5 6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점)**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관계법령 발췌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

6. 보칙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상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상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3항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4조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관련 ()의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총점 점(평균 점)을 획득하였음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심사결과
(의견)

첨부서류

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5조----- ----- ----- -----.</p>
<p>제3조(심의 및 평가) ① (생략)</p> <p>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3조(심의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제8조에 따른 ----- ----- 각 호와 같다.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4조(제안서 접수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6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p>	<p>제4조(제안서 접수등) ----- ----- ----- ----- 제7조제1항----- ----- -----</p>

<p>고,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p>	<p>----- ----- -----.</p>
<p>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조례 <u>제8조제1항</u>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 <u>제12조제1항</u>----- ----- ----- -----.</p>

관계법령 발췌

<p>「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p>
<p>6. 보칙</p> <p>② 조례 등 위임</p> <p>○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86호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안 제2조)
- 임기 규정 삭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5,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안 제2조)
- 나. 임기 규정 삭제(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예정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의 수집·연구
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
4. 그 밖에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구사 편찬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구사 편찬 업무 부서의 장”으로, “문화예술담당”을 “구사 편찬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사 <u>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u></p> <p>1. ~ 4. (생략)</p> <p><신설></p> <p>제4조(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 <u>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u></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인천광역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구사 편찬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u></p> <p><삭제></p> <p>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구사 편찬 업무 부서</u>의 <u>장</u>----- <u>구사 편찬 업무 담당</u>----- ----- -----.</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녹청자 박물관의 체험료 및 수강료의 감면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된 감면을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 개정(50% 감면 → 100% 면제) 및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5,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녹청자 박물관의 체험료 및 수강료의 감면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된 감면을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 개정(50% 감면 → 100% 면제) 및 면제대상자 추가 (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으로, “50%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인 <u>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 치 및 운영 조례</u>」 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료 및 수강료를 <u>50% 감면할 수 있다.</u></p> <p>1. · 2. (생 략)</p> <p>3. 다자녀 우대에 따른 <u>세 자녀</u> 이 상을 둔 세대의 자녀</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3조(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인 <u>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 치 및 운영 조례</u>」 제13조제4항-- ----- ----- ----- ----- 면제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두 자녀</u> --- -----</p> <p>4.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6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p> <p>5.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관계법령 발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6. 2
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
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
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신설 2023. 7. 1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②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2024. 12. 3.>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	100분의 50

차·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비 고

-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2. 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KTX	100분의 50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100분의 10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고 궁	100분의 100
7. 능 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5-2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소 속	인천광역시 서구		직 위	의원	성 명	박용갑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차남	현대건설	208	매각	7,207	2024.7.19.	키움증권
차남	디오	386	매각	6,365	2024.11.1.	키움증권